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18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최기상·임미애·정성호

김동아 · 김정호 · 박희승

김성환 • 박상혁 • 김태선

이수진 • 박 정 • 김남희

백승아 · 서영석 · 문정복

민병덕 의원(16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의료비의 15%(난임시술비는 30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와 관련, 국가 등에 의한 난임치료 지원은 출산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저출생 극복을 가능하게 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가 총급여액의 3%를 넘는 비용에대해서만 적용되어 난임치료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요건을 난임시술비 공제에 한하여 적용을 배제함으로써,

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국민의 행복추구권 확대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 삭제). 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9조의4제2항제4호 단서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의료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
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(생	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	2
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	
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)를	
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	
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	
의 100분의 15(제3호의 경우에	
는 100분의 20, 제4호의 경우에	
는 100분의 30)에 해당하는 금	
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	
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	4
술(이하 이 호에서 "난임시	
술"이라 한다)을 위하여 지출	
한 비용(난임시술과 관련하여	
처방을 받은 「약사법」 제2	
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	
포함한다). <u>다만,</u> 제1호부터	<u>&lt;단서 삭제&gt;</u>
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	
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	

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뺀다.

③ ~ ⑪ (생 략)

③ ~ ① (현행과 같음)